

조선의 울릉도 관리와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

이 훈*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의 강역 관리와 울릉도
 3. 1614년 일본측(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
 4. 1614년 동래부사의 회답 서계와 조선의 대응
 5.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과 예조 서계로 본 1614년의 대응 논리
 6. 대마번의 대막부 대응과 1614년 동래부사 서계의 행방
 7. 맺음말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울릉도 영유와 관리 문제를, 1614년 일본측(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그 결과 1614년 동래부사의 회답 서계(윤수겸·박경업)에 반영된 조선 정부의 울릉도 영유에 대한 논리 및 변경 관리(關防) 방침이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시 예조의 서계(예조참판李畬, 1694.9)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 논리가 관철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① 첫째는, 울릉도가 조선 영유라는 근거로서「礮竹島(竹島)=鬱陵島」라는「1도 2명」논리가 이미 1614년 당시부터 구사되었다는 것이다.

② 둘째, 대마번주 앞으로 발급된 동래부사의 서계(2통)에는, 우선 ‘일본인(또는

*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mail: ihun8337@daum.net

일본 선박)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및 ‘약조’(기유약조, 1609)에서 정한 항로(「대마도↔부산포」직항로) 이탈 시에는 일본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15세기 중반 이래 조선의 해금(海禁)을 바탕으로 한 변경 관리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③ 셋째는, ‘일본인(또는 일본 선박)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를 막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기재된 동래부사(1614, 윤수겸·박경업)의 회답 서계를 대마번이 수령한 이후 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마번은 ‘울릉도쟁계’ 교섭(1693~1699년)이 진행 중이던 1695년 시점까지 80년 가까이 보관·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鬱陵島(蔚陵島)=竹島’의 증빙 자료로서 동래부사(1614, 윤수겸·박경업)의 회답 서계를 막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로는 대마번의 존속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에 대한 ‘이에야스 지시’의 참칭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보았다.

주제어 : 대마번(對馬藩), 礮竹島(의죽도), 울릉도, 1도2명, 關防, 海禁, 도쿠가와 막부, 서계(書契), 윤수겸(尹守謙, 동래부사, 1614.7), 박경업(朴慶業, 동래부사, 1614.9), 이여(李翥, 예조참판, 1694.9)

1. 머리말

최근 울릉도 관련 연구의 특징으로는 이전에 비해 관점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693년 안용복의 일본 피납이 계기가 되어 조일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된 ‘울릉도쟁계’의 경우, 1990~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울릉도·독도가 조일 양국의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주로 영유권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이 확고해진 시기는 17세기 말, 영유권을 공고화시킨 주체로서는 조선 정부보다도 안용복 개인의 영웅적 행적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비해 2010년 이후에는 울릉도쟁계에 대해 영유권 문제를 넘어 조일 교섭사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게 되었다.¹⁾ 즉 울릉도쟁계를 17세기 말의 돌출적인 사건으로 취급하기보다는,

1) 임진왜란 이후 260년간의 조일관계에 한정해서 본다면, 조선의 경우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강역에 대한 인식 및 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구체적으로 대마번)에 대한 통제정책도 강화되었다. 또 대마번 역시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대조선

17세기 이후 조일 양국인의 울릉도 도해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충돌로 파악하여, 당시 조일 간 통교체제 속에서의 교섭 경위 및 정치·외교사적인 의미를 추구해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²⁾ 그 결과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안용복의 평가에 큰 변화가 있었다. 안용복의 2차 일본 도해 이유 및 행적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울릉도·독도 영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식의 영웅적인 평가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개인의 일탈 내지는 돌출적인 사고로 보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 전략을 물리적인 ‘힘’으로 협박하는 방식(임란 후 ‘武威’를 내세워 떼쓰기)에서 논리적 대응(기록의 중시)으로 변경하게 되는 점을 들어 조일 교섭사 내지는 조일 양국의 정치사 안에서 ‘울릉도 쟁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말한다.
- 2) 홍성덕,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교섭과 울릉도 -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을 중심으로-」,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지리·고고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송휘영,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대마번(對馬藩)』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Ⅲ, 영남대 독도연구소, 경인문화사, 2011
- 이계황,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와 조·일 외교교섭」 『일본역사연구』33, 2011
- 최은석, 「안용복 사건의 무대 - 17세기 돛토리번과 오키국」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84, 2012
- 장순순,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 시비」 『동북아역사논총』 87, 2012
- 장순순, 「17세기 후반 ‘鬱陵島 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1699년)」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 윤유숙, 「근세 돛토리번(鳥取藩) 町人の 울릉도 도해」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 윤유숙,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118, 2012
- 윤유숙,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 사건과 대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123, 2013
- 윤유숙, 「1696년 오키(隱岐)에 도항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 『일본역사연구』38, 2013
- 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해안, 2016
- 박지영, 「‘鳥取藩의 고문서’와 독도영유권」 『한국영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日本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3)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주로 일본측의 사료를 바탕으로 안용복의 2차 도일을 “대마번의 냉대 호소를 위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안용복’이라는 고유명사 대신 ‘조선인 어민’으로 표현하거나, ‘안용복사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유권에 대한 기여로는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정도로 평가하고 있다(『隱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 『鳥取地域史研究』9, 2007/『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10, 2008/『安龍福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55, 2009/『安龍福事件考(안용복사건 고찰)』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대구 한의대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 1, 2012/『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中公新書, 2016) .
- 윤유숙은, ‘안용복’이라는 고유명사 대신, ‘조선인’이라는 일반명사로 대체하여 안용복의 영웅적 행동을 상대화하였다(『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 사건과 대마

둘째는, 조일 양국인의 울릉도 도해에 대한 역사적 연원, 소위 울릉도쟁계 이전의 전사(前史)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게 됨에 따라, 이미 17세기 초에 일본측(對馬藩⁴⁾)의 울릉도 입거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방침으로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언급하는 경우도 보이게 되었다.⁵⁾

셋째는, 영유 및 교섭의 주체로서, 안용복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조선 조정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라는 양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조일 양국 교섭 시 중개 역할을 했던 대마번의 존재와 역할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울릉도쟁계에 대한 막부측의 결론이 이미 1696년에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1699년에야 마무리되는 등, 교섭이 장기화된 이유를 대마번의 교섭 행태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⁶⁾

이와 같은 교섭사적 연구의 경우, 외교 교섭 및 영유의 주체로서 개인이 아닌 양국 정부를 부각시킨 한편, 조선 정부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17세기 초까지 끌어올린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소개된 1614년

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123, 2013)/『1696년 오키(隱岐)에 도향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 『일본역사연구』38, 2013).

박지영은, 안용복의 2차 도일을, “1693년 피납 당시 입었던 모종의 피해에 대해 돗토리 번 당국 또는 일본정부(도쿠가와 막부)에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鳥取藩의 고문서’와 독도영유권』, 『한국영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9).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안용복의 2차 도일을 영유권 주장과 관련지어 조선 정부의 ‘밀사’로 해석하여 영웅시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최영성,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독도연구』26, 2019).

- 4) ‘일본(對馬藩)’ 또는 ‘일본측(對馬藩)’이라 표기할 경우, 임란 이후 일본의 막번(幕藩)체제 하에서 대조선 교섭주체로서의 ‘대마번’을 의미할 경우에 한해 사용하기로 한다. 단, 부득이 ‘대마도’로 표기한 경우도 있는데, 임란 이전의 조일관계에서 ‘대마도’를 지칭하거나, 지명(地名)을 가리킬 경우에는 ‘대마도’로 표기하였다.
- 5) 池內敏, 『‘國境’未滿』, 『日本史研究』630, 2015
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해안, 2016
- 6) 울릉도쟁계 교섭에서 대마번의 교섭 행태 내지는 이해관계를 부각시킨 연구라 하더라도 정작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막부의 ‘구두 교섭’ 지시를 교섭 장기화의 이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696년 막부의 결정을 조선에 정식 외교문서인 ‘서계’로 알리지 않고 막부의 지시에 따라 ‘口上覺’으로 알렸기 때문에 조선측과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해안, 2016, 188~194쪽). 그러나 울릉도쟁계 교섭의 장기화를 막부의 구두 교섭 지시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근에는 이 ‘구상각’에 대해 현대외교의 교환공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섭경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박현진,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의 증명력-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확립·해상국경목시합의-』, 『국제법학회논총』58-3, 2013/박현진,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사본)의 증명력(II)-국제재판에서의 입증책임·기준과 史書·사료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63-4, 2018/이성환, 『울릉도쟁계의 조일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26, 2019).

동래부사의 서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울릉도 영유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의사표시의 ‘흔적’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의미부여는 하고 있지 않다. 조선이 1614년 동래부사 명의로 서계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 서계가 대마번에 전달된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7세기 말까지 조선 정부의 울릉도에 대한 영유 의사 표시의 소홀 내지는 방치의 근거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⁷⁾

그런데 일본측 기록을 보면, 조선 정부가 임란 이후 최초로 울릉도 영유 의사를 표시한 구체적인 문건, 즉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를 대마번이 분명히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막부에 대한 대응에서는 위 서계의 존재 및 행방에 대해 모호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마번은 막부에 울릉도와 관련된 조선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는 단지 『지봉유설』과 『여지승람』만을 제출했을 뿐, 조선 정부의 입장이 제시된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는 1696년 일본인의 울릉도(竹島) 도해를 금지하는 막부의 법령(겐로쿠(元祿) 죽도도해금지령)이 정해지는 순간까지 80년 동안 은닉한 채 대응하였다. 만약 대마번이 1693년 안용복의 피납 당시, 또는 울릉도쟁계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 1614년 동래부사 서계의 존재와 그 내용을 막부에 보고했다라면 결론이 훨씬 더 신속하게 내려졌거나, 또는 조일관계가 더욱 교착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임란 이후 조선의 강역에 대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1614년 서계의 발급 배경과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조선 정부의 울릉도 영유에 대한 의사 표시를 17세기 말 울릉도쟁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1614년에는 이와 관련된 동래부사 명의로 서계가 2달 만에 발급자를 달리하여 더욱 엄중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1614년 동래부사 서계의 행방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즉 대마번이 이 서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섭의 장기화 이유 및 조일 간 교섭의 실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7) 池内敏, 「‘國境’未滿」 『日本史研究』630, 2015

2. 조선의 강역 관리와 울릉도

조선은 고려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왜구 침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울릉도가 중간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03년(태종 3) 8월 울릉도(무릉도)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⁹⁾ 소위 ‘거민 쇠출’ 또는 쇠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울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함으로써 왜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한편, 울릉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이 왜구 대책으로 도서 지역 거주민을 쇠환한 것은 울릉도 만은 아니었다. 서남해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이 왜구로부터 약탈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14세기 말~15세기 초에 걸쳐 서남해 도서에 설치되어 있던 치소(治所)를 내륙으로 이동시키고 거주민을 육지로 쇠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섬이 안정되면 치소를 다시 복원시켰다.¹⁰⁾ 도서 거주 주민을 쇠환하여 섬을 관리하는 조치는 성종대(1470~1494년)에 한층 강화되어 임란 직전인 16세기 말까지 정책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쇠환하는 정책을 실시한 지 얼마 안되어 대마도¹¹⁾가 1407년(태종 7) 3월 대마도 사람들의 울릉도 이주를 조선에 요청해 왔다.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
와 토물(土物)을 바치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貞茂)

-
- 8) 울릉도의 지명 표기에 대해서는 이해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a) 내용상으로는 울릉도를 가리키지만, 사료상 ‘무릉도’·‘우릉도’·‘礮竹島’라고 기재된 경우, 사료상의 용어를 ()로 처리한다.
 예시; 울릉도(무릉도), 울릉도(礮竹島)
 (b) 단, 부득이 사료상의 용어를 그대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하여 처리한다.
 예시: ‘무릉도’, ‘礮竹島’
- 9) 『태종실록』3년(1403) 8월 11일 병진.
 10) 주민을 육지로 쇠환하는 조치는 모든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신명호, 『조선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海島정책을 통한 空島政策 재검토』 『역사와 경계』66, 2008). 전라도 진도(珍島)의 경우, 1350년(충정왕 2) 왜구 침략으로 珍島縣의 治所가 내륙으로 옮겨졌는데, 1409년(태종 9) 진도현이 해남과 병합되어 海珍郡으로 승격되면서 靈巖郡 昆湄縣에 치소를 두었다가, 섬이 안정을 되찾자 해진군의 치소는 원래 위치인 진도로 이동했다(김경옥, 『조선후기 島嶼 연구』 해안, 2004, 50~51쪽).
 관련 사료는, 『태종실록』9년(1409) 2월 3일 정축·『태종실록』14년(1414) 2월 26일 경오조 참조.
- 11) ‘대마도’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앞의 주)4를 참조.

가 무릉도(武陵島)를 청(請)하여 여러 부락(部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나더러 반인(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

(중략)

임금이 말하였다.

“그 경내(境內)에서는 상사(常事)로 여기지만, 만일 ‘월경’(越境)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¹²⁾

즉 대마도주 소 사다시케(宗貞茂)가 사자를 보내 왜구에게 붙들려간 조선인을 되돌려 보내면서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무릉도)에 이주해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왜구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가 조선 정부의 쇄환 조치로 울릉도가 비어있음을 알고 이주를 요청한 것이다. 이를 허용하자는 신료(남재)의 의견이 있었지만 국왕 태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은 대마도인의 울릉도 이주를 타국인의 ‘월경’, 즉 국경을 넘어오는 행위로 받아들여 자칫 일본국왕(무로마치 막부 쇼군)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여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왕 태종의 울릉도 인식이다. 대마도인의 울릉도 이주 요청을 ‘월경’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자 동쪽의 경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고려 이래 울릉도 해역을 ‘동계’(東界)로 보는 인식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¹³⁾

이후 조선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울릉도 관리를 위해 1416년 9월 삼척 사람 김인후(前萬戶)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또는 무릉등처안무사)로 삼아 울릉도에 파견하여 거주민을 설득해서 육지로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¹⁴⁾ 1417년 김인후의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가구 수가 15호에 86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지만 겨우 3명 만을 쇄환해 왔다. 이어 1419년·1425년에도 김인후가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다시 임명되어 울릉도(우산도, 무릉도)에 가서 주민을 쇄환해 왔으나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1419년에는 17명을 쇄환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1425년의 경우 쇄환되어 온 울릉도 거주민은 20여 명이였다. 이들은 부역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예조참판이 피역(避役) 백성을 처벌하자고 건의했지만, 국왕 세종은 “몰래 타국에 도망간

12) 『태종실록』7년(1407) 3월 16일 경오.

13) 『고려사』 『지리지』에는, ‘울릉도’가 ‘東界 울진현’조에 수록되어 있다.

14) 『태종실록』16년(1416) 9월 2일 경인.

것이 아니므로 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쇄출된 울릉도 거주민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며, 세종은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로 이주시켜 3년 동안 復戶(세금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¹⁵⁾

3차례(1417·1419·1425년)에 걸친 안무사 파견을 통한 거민 쇄출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우산·무릉 등처)에 여전히 주민이 거주함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이 모색되었던 것 같다. 1436년(세종 18)에는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이 울릉도에 만호(萬戶)와 수령(守令)을 두고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다. ‘무릉도’와 ‘우산’은 토지가 비옥하고 방어하기가 쉬우니 일시적인 안무사 파견보다는 지방관(만호와 수령)을 파견하고 주민들을 모집하여 장기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세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¹⁶⁾

그러자 1437년에는 강원감사 유계문이 다시 울릉도에 “현(縣)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 영동의 울타리”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신료들과의 논의 결과, 세종은 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 탐색하면 왜노(倭奴)들도 대국의 땅이라 생각하여 몰래 점거할 생각은 내지 않을 것이라 했다.¹⁷⁾ 조정에서는 왜인이 울릉도를 점거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이듬해인 1438년 4월 행정단위로 ‘현’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을 파견하여 울릉도 거주민을 쇄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⁸⁾ 경차관이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임무를 부여받아 지방에 파견되는 관직으로, 전호군 남회(南膺)와 전부사직 조민(曹敏)이 경차관에 임명되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이들은 울릉도를 순심한 결과 66명을 쇄출해 왔다.¹⁹⁾

그런데 이들 66명이 조선 정부의 울릉도 거주민 쇄출 방침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울릉도 산물을 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울릉도로 이주해 간 자들도 밝혀짐에 따라, 그해 겨울부터 울릉도 거주민에 대해 ‘처벌’이 처음으로 단행되게 되었다. 1438년(세종 20) 11월에는 울릉도(무릉도)에 숨어 들어간 두목을 처형하되 나머지 중범에 대해서는 함경도 경성(鏡城) 이주를 단행하였다.²⁰⁾ 그 이듬해인 1439년(세종 21)에도 울릉도 거주민에 대한 형벌이 가해졌다.

15) 『세종실록』7년(1425) 10월 20일 을유.

16) 『세종실록』18년(1436) 윤6월 20일 갑신.

17) 『세종실록』19년(1437) 2월 8일 무진.

18) 『세종실록』20년(1438) 4월 21일 갑술.

19) 『세종실록』20년(1438) 7월 15일 무술.

20) 『세종실록』20년(1438) 11월 25일 을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김범(金凡)·귀생(貴生) 등이 함부로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가 살았
사오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¹⁾

형조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무릉도)에 함부로 들어가 거주한 주민에 대해絞刑(목을 졸라 죽이는 死刑)이 단행된 것이다.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리란 울릉도에서의 자국민 거주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1438년(세종 20)의 첫 조치에서는 쇠출된 주민을 육지에 분치시키는 수준으로 엄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39년(세종 21)의 이 조치는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리에 보다 엄중한 형벌(嚴刑)을 적용한 첫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울릉도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치 이후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말 숙종 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년이 넘도록 ‘우산’과 ‘무릉’에 관해서는 단 3건의 기사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1458년(세조 3) 유수강(柳守剛)이 ‘우산·무릉’ 양도에 설읍(設邑)을 건의한 건,²²⁾ 1471년(성종 2) 강원도 관찰사 성순조(成順祖)에게 ‘무릉도’ 거민을 잡아오도록 지시한 건,²³⁾ 1511년(중종 6) 강원도 관찰사에게 ‘무릉도’를 살피도록 지시한 건이 그것이다.²⁴⁾

요컨대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리란, 「관리(경차관) 파견을 통한 조사와 주민의 쇠환,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주민의 처벌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1439년 이후는 관련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1438년 ‘순심경차관’의 파견을 계기로 울릉도 거주민에 대한 수색과 처벌 강화가 풍문으로 이어져 실제로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²⁵⁾ 1511년(중종 6)을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선 정부의 울릉도 관련 기록이 관찬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민의 울릉도 거주 금지 및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도 병행한다는 울릉도 관리지침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울릉도 영유와 관리에 대한 조선의 이러한 정책은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예조참판(권해, 1693.12)이 대마번주에게 보낸 외교문서(회답서계)에는

21) 『세종실록』21년(1439) 2월 7일 병진.

22) 『세조실록』4년(1458) 4월 16일 기유.

23) 『성종실록』2년(1471) 8월 17일 정사.

24) 『중종실록』6년(1511) 5월 21일 경오.

25)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233쪽.

‘해금’(海禁)으로 기재되었다.²⁶⁾

3. 1614년 일본측(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

임진왜란 이후 조일 간에는 국교가 회복(1607년)된 지 얼마되지 않은 1614년(광해군 6) 6월, 대마번(對馬藩)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지시라 칭하면서 돌연 울릉도(礮竹島, 이소다케시마)의 크기와 실태 탐사를 요청해왔다. 이때의 대마번 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측 기록에 따르면 모종의 서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현재 대마번 사자가 지참해왔다는 이 서계는 조일 양국의 어느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²⁸⁾ 단,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및 동래부사의 서계가 ‘회답 서계’ 형식이었던 것을 보면, 조선은 일단 대마번 사자의 요청을 현안으로 받아들여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동래부사의 회답 서계 내용으로 볼 때 대마번 사자가 지참했다는 서계에,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건은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에야스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또한 실제로 이에야스가 지시를 내렸는지의 진위(眞僞)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 정부가 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2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에야스 지시의 기재 여부」부터 보기로 한다.

우선 대마번 사자가 울릉도 탐사를 요청해온 1614년이라면, 이에야스(家康)가 그의 아들인 히데타다(秀忠)에게 막부(幕府)의 쇼군(將軍) 직을 계승(1605

26) 『동문회고』부편, 권26, 爭難 예조참판 답서(權階, 1693.12).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다.

“弊邦海禁至嚴制束濱海漁民,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蔚陵島, 亦以遼遠之故, 切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27) 『변례집요』권 17, 「鬱陵島」갑인(1614년). 『증정교린지』권4, 「鬱陵島礮竹島辨正顛末」(礮竹島)

위의 2 기록과 실록 등, 조선측 기록에는 ‘礮竹島’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마번의 『朝鮮通交大紀』에는 ‘礮竹島’로, 막부측 기록인 『通航一覽』에는 ‘礮竹島’와 ‘礮竹島’가 병기되어 있다(한일 양국 기록의 ‘礮竹島’ 기재 용례에 대해서는 유미림의 논고(「이소다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 『영토해양연구』12, 2016) 참조.

28) 임란 직후부터 조일통교가 안정되는 1607~1635년까지, 즉 통교초기단계에서 대마번이 조선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서계)를 수록한 『善隣通書』 및 『萬曆·天啓·崇禎不時來書』, 대마번측 기록인 『朝鮮通交大紀』, 막부측 기록인 『通航一覽』을 모두 확인했으나, 이에야스의 명이라며 ‘礮竹島’ 탐사를 요청한 서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년)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하는 외교 문제 및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에야스(大御所, 은퇴한 쇼군)였다. 따라서 대마번이 이에야스(家康)의 명령이라며 조선에 ‘礮竹島’(울릉도) 탐사 요청과 같은 중대한 외교현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선측이 이에야스의 지시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마번 사자가 지참해 오는 문서(書契)에 구체적인 문언으로 기재해 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동래부사(윤수겸, 1614.7)의 회답 서계에, “서계 가운데 ‘礮竹島’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대목이 있는 것을 보면, 대마번 사자가 지참해온 서계에 『이에야스의 지시』라는 구체적인 문언 기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울릉도 탐사에 대한 이에야스의 지시란 동래부측과 대마번 사자의 질의응답(口頭)을 통해서야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란 이후 조일 양국 간의 교섭에서 외교문서에 구체적인 문언을 기재하여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국의 이해를 위해 구두로 교섭하는 것이 정치적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중하지는 않지만 구두 교섭을 선택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²⁹⁾ 그렇지만 1614년 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의 경우, 문서에 ‘이에야스(家康) 지시’에 관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은 광해군 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에야스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이를 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 교섭을 택했을 수도 있다. 또한 일본측 사정으로 볼 때도 이에야스의 지시를 명문화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1614년 당시 일본의 정국 동향이란,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중앙정권으로서 정국 장악을 위해 오사카(大坂)를 거점으로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의 무가 다이묘(武家大名)를 동원하여 내전(大坂의

29) 조선이 1643년 게이통신사를 파견할 당시, 대마번은 외교 교섭의 첫 번째 절차라 할 수 있는 파견 요청 자체에 대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해 왔다. 그 이유는 도쿠가와 막부가 전국의 다이묘(大名)에게 명실공히 중앙정권으로서의 권위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일본의 요청에 대한 ‘회답’이 아니라, 조선의 ‘자발적’ 파견으로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마번의 ‘구두’ 교섭이란 국내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적 공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218~226쪽).

陣)을 치를 때였다. 그런데 도쿠가와 막부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내전(內戰)을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마번(對馬藩)을 통해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는 외교교섭에 착수하였다. 무가 다이묘(武家大名)의 하나인 도쿠가와 쇼군이 명실공히 일본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전에서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 이웃나라인 조선의 통신사를 초빙하여 중앙권력으로서 국제적 공인을 받는 것이 막부정권의 권위 확보를 위해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측의 통신사 요청은 최종적으로 1617년 회담검쇄환사 파견으로 실현은 되었다. 그러나 교섭초기 단계인 1614년(광해군 6)이라면 조일 간에 국교는 재개되었지만 전후 복구도 미진한 상황에서 관민에 반일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도쿠가와 막부가 일찍이 국내정치적인 필요에서 1614년 4월부터 대마번을 통해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왔지만, 조선이 2번이나 거절하는 등, 도쿠가와 막부와외의 외교에 부정적으로 대응하였다.³⁰⁾ 이에 이에야스의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선의 영유인 울릉도(礮竹島) 탐사를 요청한다는 문언을 외교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대마번은 일찌기 1407년(태종 7)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이주를 요청했다가 ‘월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대마번이 서계에 “이에야스의 지시로 조선 영유인 울릉도(礮竹島) 탐사를 요청”한다는 문언을 기재했다가 조선측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이 문제가 장차 양국간에 어떠한 마찰로 비화될 지는 미지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단은 막부의 최대 현안인 통신사 요청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울릉도 탐사 요청에 대해서는 구두로 탐문해 보는 수준에서 이에야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한 가지 가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곧바로 조선과의 외교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조선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문제를, 안으로는 내전(內戰), 밖으로는 통신사외교 성사를 긴급 현안 과제로 둔 이에야스가 직접 대마번주에

30) 이훈, 『광해군대 ‘회담검쇄환사’의 파견과 대일본외교』 『한일관계사연구』52, 2015, 141~146쪽.

울릉도(礮竹島) 탐사를 요청해 오기 2달 전인 1614년 4월, 대마번이 제2대 쇼군 히데타다의 혼사 축하를 명분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왔을 때, 조선은 전례가 없다며 예조참의(金縷) 명의로 서계를 보내 거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자 대마번은 1614년 11월 또 다시 사자(橘智正)를 보내, 국혼 축하가 이에야스(家康)의 명령임을 내세워 통신사를 요청해 왔다. 조선은 이번에는 경조사(慶弔事)에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명(明) 나라의 허락사항이라며 예조참의(金縷) 명의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朝鮮通交大紀』卷5, 萬松院公(宗義智) 참조).

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본측, 특히 대마번 기록에서 이에야스나 막부측 지시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야스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대마번 사자가 지참해온 서계)에는 기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1605년 대마번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대조선통교를 ‘가역’(家役)으로 부여받은 이상, 위 요청건과 관련하여 이에야스가 직접 지시한 문건 또는 이에야스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막부측 문서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 임란 이후 이에야스의 지시와 관련된 문서나 서계란 대마번이 대조선 통교활동, 즉 ‘가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와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마번의 존속 내지는 대마번주 소씨(宗氏) 가문(宗家)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서였다. 그런데 대마번주 소씨 가문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豊臣秀吉, 徳川家康), 또는 막부측 고위관료(老中)로부터 받은 중요문서를 대대로 간직해온 ‘귀중문서’ 다발을 조사해 본 바, 그 안에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1614년의 울릉도 탐사 요청과 관련된 문건은 단 1건도 없었다.³¹⁾

뿐만아니라 임란 직후의 통교 내용을 정리한 대마번의 『朝鮮通交大紀』(1725년)에도 ‘1614년 대마번 사자가 지참했다는 서계의 흔적’이나 ‘이에야스의 지시 운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朝鮮通交大紀』란 번의 유학자인 마츠우라 기에몬(松浦儀右衛門)이 번의 지시에 따라 처음부터 조선과 대마번의 특수한 통교 역사에 대해 ‘막부 열람’을 전제로 편찬된 기록이었다.³²⁾

이 『朝鮮通交大紀』에서 1614년(慶長 19)의 통교 부분을 보면, 단지 「此比磯竹島を以て日本の境なりとせし也」(이즈음磯竹島가 일본의 경계가 되었다)라는 단 1줄의 짧은 문장으로만 되어 있다.³³⁾ 즉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

31)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대마번주 소씨 가문(宗家, ‘소케’라고도 함)이 임란 이후 대조선 통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야스(家康)나 막부측(老中 등)로부터 받은 지시의 書狀 등(총 52종 72점, 인장 포함)을 ‘귀중문서’로 분류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막부 관련 문서는 대마번주가 대조선통교라는 ‘가역’을 수행하는데 법적 권위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씨 가문 대대로 귀중하게 여겨왔던 것인데, 이 귀중문서 가운데서도 ‘磯竹島’ 관련 서계(1614년)나 이에야스 지시와 관련된 문건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에야스(家康)의 이름이 언급된 문서로는 『家康初命和睦次第并信使來朝記』(RB 20, 貴 20)이 있으나, 이에야스나 막부측이 직접 지시한 문서라기보다는 임란 직후 통교 재개 과정에서 대마번주(宗義智)가 ‘家康公’에게 和好를 건의하게 된 경위 및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32) 『朝鮮通交大紀』(1725년)는 대마번의 유학자 마츠우라 기에몬(松浦儀右衛門, 靄沼, 松浦允任(마츠우라 마사타다) 1676~1728)이 편찬한 책이다. 중세(宗經茂)에서 근세(宗義方)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조선의 통교관계를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편찬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편찬하였다.

33) 『朝鮮通交大紀』권5, 萬松院公(宗義智), 慶長 19년(1614).

용으로 수록된 이 문장에는, 울릉도(礮竹島)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본의 경계가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전혀 없다. 당시 막부정권의 최고 실력자인 이에야스(家康, 大御所 은퇴 쇼군)의 분부였다면 그 지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에야스의 지시를 의미하는 문언을 기재한 서계, 또는 관련 문서나 편찬자의 의견(또는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朝鮮通交大紀』에는 1614년(7월 및 9월) 동래부사의 서계는 수록되어 있지만, 1614년 6월 당시 대마번 사자가 지참했다는 서계는 물론, 울릉도(礮竹島) 탐사 지시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경위로 일본의 경계가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한 편자의 언급이 전혀 없다.

막부측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조선, 류큐(琉球) 등과의 통교 경위를 수록한 『通航一覽』에도 「慶長十七壬子年((1612), 此頃礮竹島をもつて日本の境なりとせし也」라 하여, 年度の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朝鮮通交大紀』와 거의 동일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³⁴⁾

‘울릉도쟁계’가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대마번(對馬藩)이 『朝鮮通交大紀』를 편찬하면서, 1614년 6월 ‘막부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지시’가 나오게 된 경위 설명이 전혀 없이, 더구나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게, ‘울릉도(礮竹島)가 일본의 경계가 되었다’는 단 1줄의 문장으로 처리한 것은, 울릉도쟁계 교섭과 관련된 대마번의 대막부 대응 경위를 의식해서였다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대마번은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1614년의 동래부사 답서를 ‘大坂의 陣’ 때문에 막부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대마번이 1614년 조선측의 회답서계 자체를 막부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번이 1614년 조선과의 문서 왕복 경위를 은닉한 이유로는, 혹시라도 1614년 서계의 왕복 경위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에야스(家康)의 울릉도(의죽도) 지시를 대마번이 참칭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막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1614년 6월 대마번의 서계 발급 경위와 역사적 사실을 은닉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된다. 조선 조정의 논의를 보더라도, 1614년 일본측의 울릉도(의죽도) 탐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

34) 『通航一覽』 권137, 朝鮮國部 113, 竹島.

『通航一覽』은 일본이 歐美제국의 압력을 받는 가운데 도쿠가와 막부의 지시에 따라 大學頭인 林復齋가 외국과의 응접에 관해 편찬한 외교사료집이다. 수록 내용은 1566년(永祿 9) ~ 1825년(文政 8) 경까지의, 조선·중국·류큐(琉球)·蝦夷地·魯西亞 등과의 대외관계를 총350권으로 편찬하였다. 林復齋의 서문이 1853년(嘉永 6) 인 것으로 보아 이때쯤 완성된 것 같다. 『通航一覽』의 조선과 관련된 통교초기의 기록은 『朝鮮通交大紀』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에야스의 지시'라는 동래부사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번의 울릉도에 대한 야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⁵⁾

왜냐하면, 조선의 울릉도 영유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의 도쿠가와 막부가 어떤 형태로든 인지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1617년 '회담검쇄환사'의 사행록(李景稷의 『扶桑錄』)에는, 사행의 후시미(伏見, 현재의 京都) 체류 중(1617.8.21~9.10) 막부의 로쥬(老中, 土井利勝)가 대마번 가로(柳川調興)와 '울릉도'(竹島) 건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 및 이경직과 대마번측과의 대화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찍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때 울릉도(礮竹島, 이소타케시마)에 일본인(礮竹弥左衛門)이 출입했지만 지금은 도해하지 않고 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조선과 국교를 재개한 이래 '礮竹島=조선령'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다.³⁶⁾ 그리고 이후에도 1620년(元和 6) 막부 쇼군(제2대 德川秀忠)의 명령에 따라 대마번사가 울릉도(礮竹島)에 들어간 일본인(弥左衛門·仁左衛門)을 붙잡아 교토(京都)로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적어도 막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와 막부측 중신들은 1620년 시점까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유로 인식했으며, 그 때문에 일본인의 울릉도(礮竹島, 礮竹島) 도해를 위법으로 판단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이렇게 본다면, 1614년 6월 대마번(對馬藩) 사자가 지참해 왔다는, "이에야스(家康)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礮竹島) 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계는,

35) 『광해군일기』6년(1614) 9월 2일 신해.

1614년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과 관련된 『朝鮮通交大紀』의 지나칠 정도로 소략한 기록 및 역사적 사실과도 다른 내용, 그리고 1614년 당시 대마번이 동래부사의 답서를 막부에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아예 처음부터 이에야스의 지시가 없었거나, 울릉도에 대한 대마번의 야심 때문에 일본 정국의 혼란을 틈타 이에야스의 지시라고 참칭(僭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6) 李景稷, 『扶桑錄』10월 1일 및 10월 5일조.

37) 대마번 기록에 의하면 1620년 弥左衛門·仁右衛門의 2명은 '礮竹島(울릉도)'에 있던 상태에서 대마번 무사에게 체포되어 교토(京都)에서 처벌되었다. 위 2명이 무엇 때문에 울릉도에 들어갔으며, 왜 체포를 명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대마번 기록에 의하면 위 2명에 관한 체포는 1620년 막부의 제2대 쇼군 台徳院(德川秀忠)이 대마번주(宗義成)에 지시한 것이었다. 17세기 말 '울릉도 쟁계'가 발생했을 때, 대마번이 1620년의 막부 조치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쇼군이 대마번(宗義成)으로 하여금 체포를 하도록 지시했던 배경을 막부가 '礮竹島'를 조선의 '竹島'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元和六年庚申礮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内=入』(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6580, MF 961 국사편찬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池内敏의 논문(『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國境'未滿, 『日本史研究』630, 2015) 참조.

막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대마번의 위서(僞書)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³⁸⁾

4. 1614년 동래부사의 회답 서계와 조선의 대응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1614년 6월 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조선 역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야스 지시의 기재」나 「지시의 진위 여부」보다는,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마번의 울릉도 입거에 대한 야욕」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대응하였다. 대응 경위를 보면,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을 ‘월경’ 문제로 취급하여, 일본 측(대마번)의 요청이 있자마자 즉각 1614년 7월과 9월에 동래부사 명의로 회답서계(回答書契)를 2차례나 발급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최근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에 대해서는, 17세기 말 울릉도쟁계의 전사(前史)로서 간략하게 언급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번의 요청을 조선 조정이 거절한 사례” 정도로 소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³⁹⁾ 이에 서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이 서계가 임란 직후는 물론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에 이르기까지 조선 정부의 ‘울릉도 영유 및 관리’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 경위를 보기로 한다.

1) 윤수겸 서계(1614.7)와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먼저 『변례집요』 및 『증정교린지』에 따르면, 1614년 6월 조선에 파견된 대

38) 지금까지 대마번이 막부를 참칭하여 改作(또는 改撰)한 ‘위서’(僞書)로는 임란 직후 국교회복기에 ‘회답검쇄환사’(1607·1617·1624년)가 지참해간 조선 국왕의 국서 3통과 막부 쇼군의 회답서 3통이 알려져 있다.

39) 지금까지 1614년 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대마번의 요청과 조선의 거절이라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몇 줄 정도의 간략한 소개에 그쳤다(윤유숙, 「1693년 돛토리 번 어민의 조선인 연행 사건」,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소수, 해안, 2016, 109~110쪽/홍정원, 『조선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16, 49쪽). 池内敏는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조선의 울릉도(礮竹島) 영유 및 일본인의 도항 금지에 대해, 조선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國境’ 未滿」, 『日本史研究』, 630, 2015).

마번 사자는 ‘규외’(規外)의 파견이었기에 동래부사가 중앙에 보고한 것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⁴⁰⁾ 여기에서 ‘규외’란 통교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실제로는 광해군 즉위 직후 조선과 대마번(對馬藩)이 임란 이후 조일 양국의 통교·무역 수량 및 범위에 대해 상호 합의한 ‘기유약조’(1609년)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조선은 이 약조에서 대마번이 1년에 조선에 파견할 수 있는 세전선(歲遣船)의 숫자를 50척에서 20척으로 제한하는 한편, 세전선 이외에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별도로 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⁴¹⁾

『변례집요』기사의 ‘규외’란 바로 이 기유약조(1609년)에서 파견을 금지한 별도의 사자에 해당되었기에, 동래부가 도항 이유를 탐문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대마번 사자는 도항 이유를, 「이에야스(家康)의 분부에 따라 조선에 ‘의죽도’(礮竹島)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로, 또 ‘礮竹島’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상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의죽도’(礮竹島)를 조선의 ‘울릉도’로 파악하였다. 동래부가 대마번 사자와 구두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파악한 이러한 정보들은 ‘월경’과 관련된 중요사안이었기에, 동래부사 윤수겸(尹守謙)이 바로 6월 자로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려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²⁾

동래부사(윤수겸)의 6월 보고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를 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인 1614년 7월 동래부사 명의로 회답서계가 신속하게 발급된 것을 보면 중앙의 검토 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614년(광해군 6, 萬曆 42년) 7월 동래부사 윤수겸 명의로 회답 서계이다.

40) 『增正交隣志』권4, 鬱陵島礮竹島辨正顛末 및 『邊例集要』권17, 鬱陵島.

41) 임란 이후 조일 양국간에는 1607년 회담겸쇄환사 파견을 계기로 국교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국왕사절(통신사) 파견을 제외하고는 조선정부와 도쿠가와 막부의 양국 정부가 직접 소통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지시로 대마번이 대조선 외교의 창구 역할(家役)을 하게 됨에 따라 양국간의 ‘통신사외교’ 이외에는 대마번이 막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오는 식이었다. 이에 광해군대 초기에는 일본측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조선 교섭루트 정비를 반영하되, 전체적인 통교·무역 규모는 임란 이전보다도 축소하여 대마번이 기왕에 누리고 있던 기득권(특혜)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과 대마번이 합의한 ‘기유약조’(1609년)라는 새로운 통교체제로 ‘조일수호조규’(1876년)때 까지 260년 이상 조일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틀이었다.

기유약조의 내용은 기록에 따라 12~13항목으로 차이가 있으며, 체결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손승철의 연구(『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 샘, 1994, 145~150쪽)를 참조.

『기유약조』의 원문은 『변례집요』(권5, 약조, 己酉萬曆37년6월조(1609)). 『增正交隣志』(권4, 약조). 『通文館志』권5, 교린 上, 萬曆己酉約條)에 자세하다.

42) 『邊例集要』권17, 鬱陵島.

조선국 동래부사 윤수겸(尹守謙) 봉복

일본국 대마주 태수 평공 죽하

사자의 도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A)그런데 서계 가운데 ‘礮竹島’에 직접 가서 탐사(看審)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실로 놀라우며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인가? (B) (대마도) 사자가 구두로 이르기를, 그 섬이 경상·강원 양도의 해양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조선)의 ‘鬱陵島’이다. 『輿圖』에도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조선)에 속해 있다. 지금 비록 황폐해지기는 했으나 어찌 감히 타인이 함부로 점거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는가? (C)옛날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조선) 사이에는 바닷가 섬(洲嶼)에 각각 구분(區別)이 있었으며 경계(分限) 또한 칼로 자르듯이 명백하다. 이에 혹시라도 왕래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오직 귀도(대마도)를 유일한 문호로 삼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다른 길로 올 경우에는) 모두 해적으로 論斷한다. 이것이 조선의 ‘關防’으로서 약조로 엄히 금하고 있는데, 귀도(대마도)가 어찌 이를 모르겠는가? 만약 조선 조정이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듣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귀도(대마도)를 의심하여 먼저 그 연유를 따지겠다. (D)우리나라와 귀도(대마도) 사이에는 서로 간에 대대로 잘 섬겨왔다. 현재 귀도는 (조일) 양국간의 일을 주선하는 있을 맡고 있다. ‘일본’이 (조선의) 취지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귀도가 어떻게 선처하는가에 달려있으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만 줄임.

만력(萬曆) 42년 7월 일⁴³⁾

- 43) 『善隣通書』4, 1614년 7월 동래부사 윤수겸 답서(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751, MF 782, 국사편찬위원회).

『朝鮮通交大紀』권5, 萬松院公(宗義智), 慶長 19년, 萬曆 42년 7월 동래부사 윤수겸의 답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東萊府使尹守謙 奉復

日本國對馬州太守平公 足下

辱問鼎來, 慰豁良多, (A)但書中有看審礮竹島之說, 深竊驚訝, 不知是計. 果出於誰某耶, (B)來使口稱, 本島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之中云, 卽我國所謂鬱陵島者也, 載在『輿圖』, 屬於我國,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以啓鬧釁耶, (C)自古及今, 日本與我國海嶠洲嶼, 各有區別, 分限截然, 而或有往來之事, 惟以貴島爲一路門戶, 此外則便以海賊論斷, 其所以慎關防而嚴禁約之義, 貴島亦豈不知乎, 朝廷若復聽聞, 必先致怪於貴島矣, (D)我國以貴島世效誠款故接遇甚聖, 今者貴島居兩國之間, 無意於委曲周旋務期終好, 而以此從與, 無乃不可乎, 日本若悉此意, 亦必省悟, 實在貴島善處, 努力自勗, 罔廢往績, 統希盛諒, 不宣.

수신인이 ‘對馬州·太守·平公’(대마변주)로 되어 있는 윤수겸의 회답서계(奉復)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⁴⁴⁾

우선 문서의 첫머리 (A)를 보면, 외교문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정중한 인사말이 거의 없다. 첫머리부터 대마변이 지참해 온 서계에, 울릉도(礮竹島)에 직접 가서 탐사하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인가”에 대한 힐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대마변 사자가 지참해 온 서계에 ‘울릉도 탐사 요청 건’은 기재되었지만, ‘이에야스의 지시’에 대해 기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회답문서의 첫머리부터 탐사 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문제삼은 것을 보면, 동래부측의 질문시 대마변 사자가 ‘이에야스의 지시’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마변의 답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답서계의 첫머리부터 일본측의 울릉도 탐사 요청 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한 불쾌감과 함께, 과연 ‘이에야스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내용에서는, 울릉도(礮竹島)가 「조선 영유인 근거」와 「일본인의 울릉도 해역 무단 도항이 금지된 곳」이라는 해금(海禁) 정책을 임란 이후 재정비된 「기유약조의 관방 지침」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B)에는, “대마변 사자가 ‘礮竹島’를 경상·강원도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 했는데, 이는 바로 조선의 울릉도이다. 「輿圖」에도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조선)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점거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즉 「輿圖」에 근거하여 조선 영유임을 밝히고 있다.

(C)는, “양국의 바닷가 섬(洲嶼)에는 경계가 분명하므로 조선에 왕래할 경우, ‘대마도를 출발점으로 하는 항로’(門戶) 하나만을 인정하되, 이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적’으로 논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조선의 이러한 관방(關防) 방침은 ‘약조’에서 정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관방’(關防)이란 변경지역의 방어와 외부로부터의 출입 관리를 일컫는 것으로

萬曆四十二年七月 日

44) ‘對馬州太守平公’이란 대마변주 소 요시토시(宗義智=平義智)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이 ‘平公’이라 칭한 것은 대마변이 보내온 서계의 ‘平姓’ 표기를 그대로 존중해서였다. 대마변주 宗氏는 15세기 중엽 슈고다이묘(守護大名)로 성장하기 위해 ‘平姓’으로改姓한 이후, 1473년(대마도주 宗貞國의 代)부터 조선에 보내오는 문서에 ‘平姓’으로 기재해 왔다(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38쪽). 改姓 시기는 대략 1469~1476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長節子, 『黒田省三氏<宗氏承統對馬守護職稱>批判』 『朝鮮學報』58, 1971).

로, 남쪽의 관방이란 기본적으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산성(山城) 구축과 함께 외부 선박의 출입 항로까지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C)에서 관방의 근거로 제시한 ‘약조’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기유약조(1609년)를 일컫는 것으로, 기유약조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⁴⁵⁾

○ 문인(文引)이 없는 자와 부산(부산포) 외에 배를 대는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無文引者及不由釜山者, 以賊論斷事).⁴⁶⁾

이 항목은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임란 이후 조일 양국 간에 재조정된 관방 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기유약조란 조선 입장에서 보면 임란 이후 대마번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대조선 통교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을 전제로 통교 내용을 재편하면서, 총체적으로는 대마번과의 통교 규모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대마번 선박의 조선 출입 관리도 간소화하는 쪽으로 조정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란 이전에는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출입구가 3개(3포)였던 것을, 임란 이후에는 부산포(釜山浦) 1곳으로 제한하게 되었다.⁴⁷⁾ 그 결과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해하는 경우, 「대마도→부산포」루트가 유일한 항로가 되었다.

위 기유약조의 관방 지침은 이러한 통교체제의 재정비를 반영한 것으로,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주체를 대마번(對馬藩) 한 곳으로 정하되, 구체적으로는 대마도에서 출선한 선박이 부산포로 ‘직항’(直航)하지 않고 부산포의 동쪽 내지 동북 쪽으로 이탈하거나, 부산포의 서쪽으로 도해하여 「대마도→부산포」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탈 시에는 ‘해적’으로 논죄하겠다는 것이었다.⁴⁸⁾ 부산포의

45) 『변례집요』 권5, 약조, 己酉萬曆37년 6월조(1609).

『增正文隣志』 권4, 약조.

『通文館志』 권5, 교린 上, 萬曆己酉約條.

46) 『변례집요』 권5, 약조, 己酉萬曆37년 6월조(1609).

‘문인’(文引)이란, 1438년(세종 20) 대마도 경차관 이에(李藝)가 대마도주와 정약하면서 시행된 제도로, 군사적 목적 이외에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들의 도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도항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문인의 양식은 서계(書契)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47) ‘삼포’(三浦)란, 1426년(세종 8)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의 청에 따라 기존에 개방하였던, 熊川(진해)의 내이포(乃而浦=薺浦), 부산포 이외에도 울산의 염포(鹽浦)를 추가로 개방하여 이 3곳에서만 일본인과의 교역을 허락한 곳을 말한다. 3포에는 각각 왜관을 두어 왜인 60명에 한하여 거주를 허락하였다.

48) 加德(加德島)은 울천에 가까운 섬으로 서쪽으로는 거제도, 동쪽으로는 부산포가 위치하여 임란 이전부터 왜인들의 왕래가 잦았다. 조선은 1550년(명종 5) 가덕(加德)에 진(鎭)을 설치한 이후 ‘가덕이서’로 넘어오는 왜의 선박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게

동쪽으로는 울릉도가 한계(東界), 서쪽으로는 가덕(加德)이 한계였다. 이것으로 보면 기유약조란 지금까지 주로 일본측(대마번)과의 통교·무역 축소·재편만이 부각되어 왔었으나, 조선의 해금을 바탕으로 한 변경 출입관리 통제, 즉 일본 선박의 항해 및 항로까지를 포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유약조(1609년)의 관방 항목을 1614년 동래부사 윤수겸 회답서계의 (C)부분에 적용할 경우, 당시의 현안인 ‘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이 누구의 지시이며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향후 일본측(대마번 포함) 선박이 부산을 벗어나 동해상의 울릉도 해역에 무단으로 도항하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조선 영유인 울릉도에 일본인이 입거하여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선 정부의 엄중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D)는 향후 조일 간에 이렇게 약조로 합의한 조선의 해금 및 관방 지침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는 조일 양국관계에서 교섭 업무를 맡고 있는 대마번의 업무 소홀이므로, 대마번이 책임지고 ‘일본’(도쿠가와 막부)에게도 조선의 지침을 주지시켜 달라는 당부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1614년 동래부사 서계에 대해서는, 17세기 초에도 조선 정부가 『輿圖』(『輿地勝覽』) 등을 근거로 울릉도가 조선 영유임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서계의 (C)를 보면, 임란 이후 기유약조(1609년)에 근거한 관방(변경에 대한 방어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일본인이 부산포를 벗어나 울릉도 해역으로 무단 도항하는 것까지 금지한, 훨씬 엄중하고 광범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조선의 이러한 관방 방침을 ‘貴島’(대마도)만이 아니라 ‘일본’(日本)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에게도 반드시 알려달라는 당부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래부사 윤수겸(1614.7)의 서계에는 조선 정부의 3가지 견해, 즉 (A) 「울릉도 조선 영유」를 비롯하여, (B) 「일본인의 울릉도 해역 무단 도항 금지」라는 관방 지침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C)이를 대마번으로 하여금 일본정부(도쿠가와 막부)에도 ‘통보’해 달라는 당부가 담긴 엄중한 내용의 외교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계란 동래부사가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었다. 비록 『조선왕조실록』 등, 정부측 기록에 1614년 6~7월 사이 중앙에서 논의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1614년 6월 동래부사가 보고해온 대마번주의 요청을 일단 외교현안으

되었다(『명종실록』5년(1550) 10월 23일 계미 및 『명종실록』8년(1553) 4월 19일 갑오).

로 받아들여 모종의 논의 절차를 거친 후 서계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이때 왜 예조(禮曹) 명의로 조선 정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임란 이후 재편된 조일관계에서 기유약조에 규정된 사자 파견이었다면, 대마번주의 조선측 외교상대는 당연히 예조참의(정3품 당상관)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1614년 6월의 대마번 사자는 ‘규외’의 사자였다. 만약 ‘규외’의 사자 파견이 전례(前例)로 굳어져 대마번이 사자를 빈번하게 파견해 오는 근거로 삼게 된다면, 사자에 대한 접대비용 증가로 통교 축소라는 기유약조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조 대신 동급의 동래부사(정3품 당상관)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박경업 서계(1614.9)와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에 대한 처벌 방침

그런데 동래부사 윤수겸 명의로 회답서계를 발급한 지 2달 만인 1614년 9월, 새로운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 명의로 대마번주에 보내는 회답 서계가 또 다시 발급되었다. 비슷한 내용의 동래부사 서계가 명의를 달리해서 연이어 작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비변사의 논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倭奴)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書啓)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回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본도(本島)가 우리 나라에 소속되었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물(方物)

49) ‘東萊都護府’(東萊府)는 지방의 한 고을 단위이기는 하지만, 일본 대마도(對馬島)와 마주한 중요한 변방 지역으로서 국방과 외교의 일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고을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중요성이 감안되어 책임 관원도 보통 종3품 당하관이 임명되는 도호부사와 달리, 품계가 높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임명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현(縣)으로 강등된 동래를 부(府)로 승격시킨 후, 1600년(선조 33) 11월 문관인 이형욱(李馨郁)[1600년 11월~1601년 12월 재임]을 동래 부사로 차출하였다. 그 후 1602년 윤2월 홍윤장(洪胤張), 그해 8월 이계선(李繼先)이 무관으로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다가, 1604년 1월 홍준(洪遵)이 임명되면서부터는 줄곧 문관이 담당하였다(한국향토문화대전).

을 거두기도 하고 도민(島民)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전고(典故)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일을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갖추어 기재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깊이 꾸짖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막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경상 감사와 부산(釜山)의 변신(邊臣)에게 공문을 보내, 조선에 온 (대마도) 선박에 특별히 유시를 하고 이 글을 전적으로 맡아 싸가지고 속히 돌아가 도주(島主)에게 보고하여 조정의 금약(禁約)을 준수하도록 하소서.⁵⁰⁾

위 비변사의 9월 건의에는 동래부사(윤수겸)의 보고(1614년 6월 장계) 이후, 조선정부가 대마번 사자의 울릉도 탐사 요청 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그 방침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선 건의 내용을 보면, 비변사는 이에 야스 지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일절 없다. 이는 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에 대해, 이에야스 지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대마도인들이 과거 이래 울릉도 거주를 노리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울릉도에의 왜노(倭奴) 왕래를 금지한 전일(前日)의 회유”라는 대목을 보면, ‘전일’이란 바로 1614년 7월 동래부사(윤수겸)의 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이 일찌기 ‘회답서계를 보내 경고’(回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번이 울릉도 탐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해서 표시해옴에 따라, 국왕 광해군에게까지 건의할 정도의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다. 비변사가 이웃나라 일본에 보내는 회답서계(윤수겸, 1614.7)를 대마도를 꾸짖는 또는 문책하는 ‘回諭’로 인식했다는 것은, 조선 정부의 ‘울릉도 탐사 요청 건’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⁵¹⁾ 이에 비변사는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 및 조사 등, 울릉도 경영 실적 및 문헌적 근거(『輿地勝覽』)를 바탕으로 대마번의 요청을 거절할 것을 재차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이에 대한 대응 주체로는 예조가 아닌 부산의 변신(邊臣)이 회답을 하되 조일 양국이 정한 ‘약조’(기유약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위와 같은 비변사의 대응 논리 및 회답서계의 발급 주체로 예조(중앙정부)가 아닌 경상감사나 부산의 지방관을 건의한 것을 보면, 앞서 동래부사 윤수겸(1614년 7월)의 서계 역시 비변사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

50) 『광해군일기』6년(1614) 9월 2일 신해.

51) ‘諭’라는 문언은, 연상의 사람이 손아랫사람을 깨우치거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官이 民에게, 천자가 관청에게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에 조일 외교관계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문언의 하나였다.

다.⁵²⁾ 광해군이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울릉도 탐사 요청 건에 대해 조선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회답서계(書契)는 바로 같은 달 9월 새로 부임한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 명의로 재차 발급되었다.⁵³⁾

동래부사 박경업의 답서 역시 조선측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대마번이 임란 직후 통교 초기단계에서 조일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필사한 『善隣通書』와 『朝鮮通交大紀』·『竹島紀事』·『竹島紀事本末』, 막부측 기록인 『通航一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614년(광해군 6) 9월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 명의로 대마번주에게 보내는 회답서계이다.

조선국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 봉복

일본국 대마주 태수 평공 족하

보내온 서한은 잘 보았다. ①‘礮竹’건에 대해서는 貴島(대마도)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꽤 씹하다. 足下(대마도주)가 이 섬이 조선에 속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며, 貴島(대마도)가 이 섬을 함부로 橫占하는 것이 불가함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직도 욕심을 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②소위 礮竹島란 조선의 鬱陵島로서, 경상·강원도의 해양에 있으며, 조선의 『輿圖』에 실려 있다. ③일찍이 신라·고려 이래 收稅(‘收取方物’) 해 왔으며, 지금(조선)에 이르러서는 逃民을 쇠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금 비록 황폐해지기는 했으나 어찌 타인이 함부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이것은 귀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④그런데도 귀도가 구차하게 日本(막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私欲 때문에 후일의 후회를 생각지 않는 것이다. ⑤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답서(7월 윤수겸)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런데도 귀도가 이를 납득하지 않고 다시 發船하여 요청하는 것은 조정(조선)을 가버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⑥귀도가 우리나라에 왕래·통행

52) ‘규외’란 임란 이후 일본과의 통교·무역량을 정한 기유약조(1609년)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조선은 기유약조에서 대마번이 1년에 파견할 수 있는 선박 수를 임란 이전의 50척에서 30척(대마번주 세건선 20척·수직인 5척·수도서선 5척)으로 제한하고, 그 선박에 한하여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접대와 의례를 배풀었다. 이는 세건선 이외에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조선에 도해하는 선박을 규제함으로써 접대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마번 사자가 지참해오는 대마번주의 서계는 의례(茶禮)가 열릴 때 조선의 접위관이 접수하였다.

53) 『광해군일기』6년(1614) 9월 2일 신해.
『숙종실록』20년(1694) 8월 14일 기유조의 남구만 회상.

하는 길은 오로지 한 길만 있을 뿐으로 門戶(부산)와 같다. 그런데도 이 문호를 이탈하여 다른 길로 올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표류라 할 지라도 진위를 불문하고 ‘賊船’으로 논단하겠으며, 弊鎮(동래부의 부산진) 및 沿海 將官은 그 약속을 엄격히 준수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알 바가 아니며, 대마도주의 언사(요청)도 또한 영성하기 짝이 없다. ⑦바라건대 귀도(대마도)는 토지와 경계의 界限을 잘 살펴 이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만력 42년(1614) 9월 일⁵⁴⁾

위의 동래부사 박경업(1614.9) 명의로 작성된 회답서계(奉復)를 보면, 비변사의 건의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도 일견 앞서 윤수겸(1614.7) 답서와 비슷한 취지로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발급 이유를 보면, ⑤와 같이 전일 윤수겸의 회답서계로 이미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1차 경고’(回諭)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번이 계속해서 울릉도 탐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발급하는 만큼, 훨씬 구체적이고 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박경업의 서계 역시, 문서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①을 보면, 막부의 지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첫머리부터 문안 인사는 커녕, 울릉도는 조선의 영유이므로 대마번이 무단으로 점령(橫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대마번

54) 『善隣通書』4, 1614년 9월 동래부사 박경업 답서(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751, MF 782, 국사편찬위원회).

『朝鮮通交大紀』권5, 萬松院公(宗義智), 慶長 19년, 萬曆 42년 9월 동래부사 박경업의 답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東萊府使朴慶業 奉復

日本國對馬州太守平公 足下

承審遠信, 良慰不淺, ①磯竹之事, 想貴島庶見覺察, 而猶復執迷深切怪愕, 足下非不知此島屬於我國, 非不知貴島不可橫占, 而尙欲攙越窺覘, 是誠何心, 恐非終好之道也, ②所謂磯竹島者實我國之鬱陵島也, 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 而載在『輿圖』, 爰可誣也, ③蓋自新羅高麗以來曾有收取方物之事, 還至我朝有刷還逃民之舉, 今雖荒蕪, 豈可容他人之冒占以啓鬧囂耶, ④貴島果知此情, 則其可從與於日本苟循一朝之私欲不顧後日之悔乎, ⑤前日復書已悉梗概, 貴島所當瞿然改圖, 而今乃直以解續發船爲言, 不幾於輕朝廷而味道理者乎, ⑥貴島於我國, 往來通行惟有一路, 譬如門戶, 此外則無論漂洶真假, 皆以賊船論斷, 弊鎮及沿海將官惟知嚴守約束而已, 不知其他, 足下之所言, 其亦疎矣, ⑦惟願貴島審區土之有分知界限之難侵恪守信義, 努力自勵免致謬戾, 尙克有終幸甚幸甚.

萬曆四十二年九月 日

이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꾸깃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②와 ③에서는, 일본측이 ‘磯竹島’라 칭한 섬은 경상도와 강원도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조선의 울릉도라는 것과, 그 근거로 『輿圖』를 제시하고 있다. 『輿圖』란 비변사의 건의에서 『여지승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⁵⁵⁾ 그런데 박경업의 서계에는 윤수겸의 서계보다도 울릉도가 조선 강역이라는 근거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라·고려 이래 收稅의 대상이었던 섬으로 울릉도에 몰래 들어간 주민을 쇠환한다는 조선의 해금 정책을 명백히 하는 한편, 지금은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조선 영유인 울릉도를 타인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 ‘월경’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④에서는 대마번이 울릉도 탐사 요청을 일본(막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조선은 어디까지나 대마번이 이를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외교문서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불신에 찬 내용으로, 조선정부가 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 및 지시의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한 의혹을 품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⑥에서는 조일 양국 간에 유일한 항로는 「대마도→부산포」직항로이며, 이를 벗어나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표류사고라 하더라도 진위를 가리지 않고 해적으로 논죄하여 처벌할 방침임을 분명히 제시하였다.⁵⁶⁾ 앞서 윤수겸(1614.7)의 서계가 기유약조의 관방 지침에 따라 「대마도→부산포」항로의 직항(直航) 준수를 요구하는 ‘통보’의 수준이었다면, 박경업의 서계(1614.9)에서는 「대마도→부산포」항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마번의 선박 뿐 아니라, 비록 일본의 민간 차원에서 항해 도중 태풍 등의 재난사고로 부득이하게 항로를 이탈하게 된 표류사고라 할지라도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선박(일본인)이 부산포로 직항하지 않고, 이를 벗어나 울릉도 해역으로 무단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문서 말미의 ⑦에서는 양국 간의 경계를 침범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1614년 9월 동래부사(박경업) 명의로 대마번주에게 발급한 회답서계란, 다음의 3가지를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55) 『광해군일기』6년(1614) 9월 2일 신해.

56) 『태종실록』7년(1407) 3월 16일 경오.

『朝鮮通交大紀』권5, 萬松院公(宗義智), 慶長 19년.

『竹島考證』상(독도자료집 II,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38~39쪽.

첫째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유라는 것을, 지도(『여지승람』)와 정책(收稅 대상·해금에 따른 주민 쇄환)으로 명백하게 제시했으며,

둘째는, 일본인(일본 선박)의 울릉도 해역으로의 무단 도항 금지를, 입관 이후 ‘기유약조’체제에서의 관방(변경 방어 및 관리) 지침을 적용시켜 외교문서로 경고함으로써 일본측(대마번)의 울릉도 탐사 요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선과 대마번이 ‘약조’(기유약조, 1609년)로 정한 항로(‘대마도↔부산포’ 직항) 준수, 즉 울릉도 해역으로의 무단 도항 금지를 일본측이 어길 경우, ‘월경’문제로 간주하여, 대마번 사자는 물론 일본의 민간인까지도 ‘처벌’하겠다는 조선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래부사 박경업(1614.9)의 서계는 윤수겸의 서계보다도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선의 ‘울릉도 영유와 해역 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백히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경업의 서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반자에 대한 조선정부의 처벌 의지’가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대마번에 대한 질책,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지 명시와 같은 내용은 통상 우호적인 외교관계에서 상대방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구사할 수 있는 언사나 조치가 아니었다. 조선의 해금과 관방에 근거한 엄중한 경고성 외교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실록』등에서 명시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거의 동일한 취지를 전달하면서 2달 만에 동래부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사 교체를 통한 효과적인 경고를 의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⁵⁷⁾

57) 근대 이전 조일 양국관계에서 주고받은 외교문서(서계)를 보면, 하나의 현안에 대해 대마번주가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앞으로 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보내왔다. 즉 대마번주와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조선의 외교상대관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의 3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일한 현안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문서 작성시 동일한 문장을 구사하지는 않았다. 상대에 따라 각각 다른 문언으로 구사하는 것이 외교상의 예의였다. 예를 들면, 18세기 말 대마번이 조선의 통신사 초빙 시기를 연장하는 교섭을 할 당시, 조선의 예조참판과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를 동일한 문장으로 발급할 경우, 조선측이 강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에 어긋난다는 고민을 하는 대목이 있다(“右書式同様ニ有之候込、於外向(朝鮮)強く相拒候など申ニハ至間敷、----但同曹(禮曹)江兩書同文ニテ者、餘リ不自由成事ニ相聞候段、氣毒候得共”, 『延聘使御書翰之儀ニ付以酌菴輪番諦西堂江古川圖書懸合之覺』,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7, MF 0631, 국사편찬위원회).

이를 참고해서 동래부사의 2통의 서계를 볼 경우, 만약 윤수겸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할 경우, 이전보다 엄중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마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취지가 미약하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임란 이후부터 도쿠가와 막부와 통교가 지속되던 동안(1607~1868년) 조선이 대마번주에게 보낸 서계(외교문서)는 거의 1만점 가량 남아 있다.⁵⁸⁾ 그러나 이 가운데 막부 지시에 대한 불신, 대마번주에 대한 횡포와 문책, 경고의 의미가 들어간 서계는 위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 2통을 제외하고는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발생 이전까지 10통도 되지 않는다.⁵⁹⁾ 17세기 말의 경고성 서계란 부산포의 왜관(倭館) 통제나 밀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월경’ 문제를 엄중하게 경고한 것은 위의 동래부사 서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임란 직후 1607년 ‘회담검쇄환사’ 파견을 계기로 조일 양국간에 국교가 회복되고, 1609년에는 ‘기유약조’가 체결되어 전후 통교체제가 새로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정 안팎으로는 반일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에 도쿠가와 정권이란 무력(兵力)에 기초한 무가(武家)정권인 만큼, 선조, 광해군, 인조 때까지도 일본이 재차 무력 도발을 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부분도 있었다. 역대 국왕들이 일본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주저하는 가운데, 침략 당사자인 일본이 대마번으로 하여금 ‘월경’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를 제기해온 것에 대해 조선으로서는 당연히 불신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에야스 지시의 진위’와 상관없이 대마번은 물론, ‘일본’(도쿠가와 막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방침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5.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과 예조 서계로 본 1614년의 대응 논리

1693년에는 조선이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로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방침을 일본측에 제시한 지 80년 만에 울릉도 도해 문제가 또 다시 조일간의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울산 어민 안용복의 일본 피납을 계기로 울릉도의 소속 문제 등을 놓고 1699년 외교적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조일 간에 6년에 걸친 치열한 교섭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 소위 ‘울릉도쟁계’(元祿竹島一件, 1693~1699)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임란 이후

새로운 동래부사 박경업(1614.9)의 서계로서 엄중한 방침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58) 『대마도종가관계문서-서계목록집』(국사편찬위원회, 1991~1993)에는 조선이 대마도에 보낸 서계(9,442점)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59) 예를 들면, 1652년 부산 왜관에서의 開市약조 준수 및 폭력시위 유감을 표명한 예조참의 金弘郁 서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 No.792)와 1689년 왜관 밀무역 통제와 관련된 동래부사 朴紳의 서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 No.1992) 정도이다.

재개된 260년간의 조일 통교 가운데서 가장 충격이 큰 사건으로, 통교 재개 이래 한가지 현안을 놓고 조일간 교섭이 이렇게 장기화 된 사례도 드물었다. 특히 조선측의 대응이 교섭 초기와 달리 강경 모드로 변경됨에 따라 양국 통교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던 대마번도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⁶⁰⁾ 이때 조선측의 대응 논리란 결국 대일본 외교문서인 예조의 서계에 구체화되었는데, 1614년 당시의 대응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울릉도쟁계’ 교섭에 임하는 조선의 초기 대응을 보면, 1693년 일본에 피납되었던 안용복이 송환되었던 시점에서는, 일본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마번(對馬藩)의 요청대로, 울릉도와는 별개로 ‘竹島’라는 섬의 존재를 인정하는 식으로 원만하게 처리하려 하였다. 즉 1693년 12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돛토리번(鳥取藩)의 오야 가(大谷家) 일족에 피납되었다가 송환되었을 당시만 해도, 조선의 논의(1693.11)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울릉도=竹島’(1島2名)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조선 영유인 울릉도에 안용복이 갔던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 보내는 예조의 서계(예조참판 權璫, 癸酉(1693).12)에는, 첫머리에 「조선의 蔚陵道일지라도 먼 외양에 어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해왔다」는 해금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貴界竹島」에까지 함부로 들어간 漁船(안용복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하였다.⁶¹⁾ 여기에서 ‘貴界竹島’란 ‘조선의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弊境(조선)之蔚陵島·貴界(일본)竹島」라는 ‘2島2名’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의 竹島’에서 피납·송환된 안용복 건을 마무리짓는 한편, 조선의 울릉도에 일본인이 무단으로 도항한 문제 역시 참여한 외교현안으로 확대하지 않으려는 외교술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조참판 권해(1693.11)의 서계에서 주목할 것은, 울릉도 도해가 조선의 해금 정책상 단

60) 대마번으로서는 울릉도쟁계 이후 새로운 대조선 대응 논리 구축을 위해 통교 재개(1607) 이후의 전례(前例) 조사가 필수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전례 조사를 바탕으로 『朝鮮通交大紀』·『竹嶋紀事』와 같은 ‘기록’(記錄)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본의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 역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통신사외교가 아닌 어떤 외교 현안에 대해 막부가 주도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도 울릉도쟁계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61) 예조참판 權璫(1693.12)의 답서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同文彙考』附編, 권26, 爭難.

『竹島紀事本末』계유년 12월일 예조참판 權璫 서계(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6583, MF961, 국사편찬위원회)

『竹島紀事』1, 甲戌元祿7년(1694) 정월 15일, 예조참의 權璫 서계(1693.12).

속의 대상임을 문서로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울릉도쟁계’에 대한 중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남구만 등이 주도권을 발휘하게 되는 1694년 이후부터는 ‘애매함을 구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교섭 초기의 입장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바로 1694년 9월 예조참관의 답서로, 대마번 사자(橘眞重)에게 전달되었다.

조선국 예조참관 이여(李翕) 봉복

일본국 대마주 태수 평공 합하

사신의 배편에 서한을 잘 받았습니다. ①우리 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蔚陵이라는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습니다. ②과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갔다 하면서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③본도(本島)는 산봉우리(峰巒)와 나무들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들이 살던 자취가 남은 자리(遺址)와 생산되는 토산물(土產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④이번에 우리나라 바닷가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함부로 경계를 넘어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의 백성 2명을 잡아가 에도(江戸)⁶²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蔚陵島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竹島)를 귀국의

62) 이때 안용복 일행은 에도(江戸)에는 가지 않았다. 서계의 기재는 아마도 나가사키(長崎)를 에도(江戸)로 착각한 안용복 일행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계(我境)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 뜻을 가지고 막부(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蔚陵島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으며, 변변치 못한 선물을 보내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만 줄임.

갑술년(1694) 9월 일⁶³⁾

예조참판(李畬, 1694.9) 명의로 발급된 위 답서에는, ①‘竹島’가 곧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로서 東海에 위치한 ‘蔚陵島’라는 것이 무려 3번에 걸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또한 조선의 강역이라는 근거로서, 관리(우산·무릉등처안무사, 무릉도순심경차관)를 보내 순찰하는 곳이며, ③문헌적 근거로는 『여지승

63) 남구만이 초안을 작성한 예조참판(李畬) 명의의 제2차 답서는 조선과 일본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다.

『同文彙考』부편, 권 26, 爭難, 예조참판 답서(李畬, 1694.9).

『竹嶋紀事』2, 元祿 7년(1694) 9월 12일(국사편찬위원회(사본), MF 5424)

『竹島紀事本末』元祿 7년(1694) 갑술년 9월일 서계(대마도 중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No.6583, MF0961).

『속중실록』20년(1694) 8월 14일(기유).

참고로 『속중실록』(20년(1694) 8월 14일 기유)의 남구만 초안에는 울릉도가 ‘鬱陵島’로 기재되어 있다.

예조참의(이여) 서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禮曹參判李畬 奉復

日本國對馬州太守平公 閣下

槎便鼎來 惠翰隨至 良用慰荷, ①弊邦江原道蔚珍縣有屬島, 名曰蔚陵, 在本縣東海中, ②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③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產,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④今者 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值, 乃反拘執二氓, 轉到江戶, 幸蒙貴國 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 蔚陵島(鬱陵島), 而以其產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方, 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 蔚陵島(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佳貺領謝, 薄物有緘, 統惟照亮, 不宣.

甲戌年九月 日

람』을 제시하고 있다. ④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도모하려 하는데, 일본 어민들이 경계를 함부로 넘어 침범해 와서 '조선의 울릉도'에 간 조선 어민을 잡아간 것이야말로 잘못된 행위이므로, 대마번으로 하여금 이를 도쿠가와 막부(東都)에 보고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를 금지해 줄 것의 4가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위 예조참판(李畬, 1694.9) 답서를 앞서의 예조참판(權璫, 1693.12) 답서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점이 눈에 뜨인다. 하나는 蔚陵道가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그동안 지방관을 보내 관리를 해왔다는 점,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竹島'로 부른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蔚陵道=竹島』(1島2名)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의 말미에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오히려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를 질책하는 한편, 향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일본의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東都)에도 알려달라, 는 당부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의 답서(예조참판 權璫, 1693.12)가 『弊境之蔚陵島·貴界竹島』라고 하여 마치 섬이 2개(2島2名) 있는 것처럼 애매한 문언으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해 보려 했다면, 위 예조참판(李畬, 1694.9)의 답서는 『蔚陵道=竹島』(1島2名) 논리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및 막부 통보 요청에 비중을 둬으로써 일본측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조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예조참판(李畬, 1694.9) 답서는 발급 명의를 예조참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왕 숙종을 포함한 중앙 조정의 논의에서 남구만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남구만이 국왕 숙종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을 예조가 그대로 반영해서 작성한 것으로, 국왕 숙종의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⁶⁴⁾ 실제로 남구만의 보고 내용과 예조참판 서계는 거의 '我人'을 '二氓'으로 수정한

64) 『숙종실록』20년(1694) 8월 14일 기유.

『숙종실록』20년(1694) 2월 23일 신묘.

『숙종실록』(20년(1694) 8월 14일 기유)에 수록되어 있는 남구만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 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產,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值,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貴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產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1곳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남구만은 이번 답서의 작성을 위해 1614년 이래 동래부가 보관해오던 동래부사(윤수겸·박경업)의 서계를 참고로 하였다.⁶⁵⁾ 예조참판(李翕)의 답서에서 강조한 3가지 내용, 즉 울릉도가 조선의 강역(‘1도2명’)이라는 근거로서 「울릉도 주민의 쇄환정책 이후 관리를 보내 수검(搜檢)」했다는 사실, 내륙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산물 등이 『여지승람』에 수록된 것,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를 막부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은, 앞서 1614년(광해군 6) 당시 동래부사(윤수겸, 박경업) 서계에 제시된 조선 측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울릉도쟁계’를 둘러싼 조선의 대응이란, 1693년 시점에서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문제삼아 조일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애매함을 추구하는 외교술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94년 이후부터는 「조선의 울릉도 영유」 및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특히 서계의 말미에 이의 「對幕府(東都) 통보」라는 3가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란 이후 대마번의 대조선 통교업무(家役) 수행에 대한 압박도 주지시킴으로써 정면 돌파 내지는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조선의 이러한 대응방침 전환은 임란 직후 1614년 동래부사 서계에 제시된 방침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찍이 선왕대부터 구사해왔던 대일본 정책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이러한 대응 방침은 마침내 울릉도쟁계가 일단락되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죽도) 도해를 금지했다는 ‘겐로쿠(원록) 죽도도해금령’을 조선에 알려온 이후 작성된 예조참의(이선부, 1698.3) 회답서계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다.

6. 대마번의 대막부 대응과 1614년 동래부사 서계의 행방

조선이 1694년 이후부터 울릉도쟁계 교섭에서 1614년의 울릉도 영유 및 해역 관리 방침을 계승하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하게 되자, 대마번은 일단 예조참판(李翕) 답서에서 ‘울릉’이라는 문언을 삭제해 주도록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조일간의 교섭은 교착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대마번은 조선이 정면 대응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논리를 탐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1614년 동래부사

65) 『숙종실록』20년(1694) 8월 14일 기유.

명의로 발급된 서계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동래부사(윤수겸, 1614.7) 서계에는, ‘울릉도의 조선 영유 및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를 대마번으로 하여금 ‘日本’, 즉 도쿠가와 막부에게도 주지시켜 주도록 당부하는 대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래부사(윤수겸)의 서계란, 수신자는 대마번주(『對馬州太守』)로 되어 있지만, 임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대마번과의 통교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다. 임란 이후 기유약조(1609년)라는 새로운 통교체제에 저촉되는 조일 양국 간의 ‘월경’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조선은 문서상의 수신자는 대마번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통교체제 하에서 일본의 최종열람자로 도쿠가와(德川) 막부를 염두에 두고 「조선의 울릉도 영유, 및 「일본인의 울릉도 해역 무단 도해 금지」 방침 및 이의 대막부 통보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조선통교를 가역(家役)으로 짊어진 대마번 으로서는 동래부사 서계를 반드시 막부에 제출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⁶⁶⁾ 나아가 윤수겸(1614.7)의 서계에는 만약 일본인이 울릉도 무단 도해 등 조선의 관방 지침을 어긴 건으로 일본(도쿠가와 막부)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선은 대마번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문책 의사까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란, 조선과 대마번 수준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일본의 중앙정부(도쿠가와 막부)에까지 전달 및 소군 열람까지를 염두에 둔 조선정부의 엄중한 경고성 외교문서였던 것이다.

‘울릉도쟁계’(1693~1699년) 경위를 기록한 대마번의 『竹島紀事本末』을 보면, 대마번은 1614년 당시 위의 동래부사 서계(2통)을 막부에 그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당시 까지도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대마번이 1614년 서계의 존재를 막부에 감추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조선측의 대응이 1694년 시점부터 1614년 동래부사 서계를 바탕으로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대마번의 논리 구축과정에서 번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누락했던 정황을 찾아 볼 수 있다.

66) 임란 이후 대조선통교를 ‘가역’으로 짊어지게 된 대마번은 조선과 무역액을 정한 세건설을 제외한, 조선과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선측 서계를 막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 222쪽). 荒野泰典은 제출 시기를 1636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역을 부여받은 1605년 이후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출했다고 생각되며, 막부의 열람을 마친 조선측 서계(원본)은 다시 대마번으로 반환되었다.

우선 대마변은 조선의 예조참판(李畬, 1694.9) 답서를 막부에 그대로 전달할 경우, 막부로부터 울릉도 문제에 대한 경위 조사의 지시는 물론,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되게 된 책임, 즉 대마변의 보고 누락·소홀로 인해 막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지게 만든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에 대마변으로서는 막부로부터 문책을 피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명분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던 것 같으며, 그 과정에서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대마변은 1695년 5월 조선 사정에 밝은 번사(高勢八右衛門·阿比留惣兵衛·陶山庄右衛門)를 조선에 파견하여 동래부사(李熙龍, 1694.9~1696.11) 앞으로 ‘힐문 4조’(조선 기록에는 ‘의문 4조’)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⁶⁷⁾ 일행 가운데 주목할만한 사람은 바로 스야마 쇼에몬(陶山庄右衛門, 陶山存)으로, 스야마는 대마변 안에서 소위 ‘조선통’에 해당하는 이론가였다. 조일의 강역과 관련된 중대문제인 만큼 대마변으로서도 당대 최고의 브레인을 파견하여 조선측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야마는 왜관 파견 지시를 계기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하여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 서한(서계) 13통을 조사한 결과, 대마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과거 ‘竹島’(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을 조선이 표류민으로 취급하여 송환해 준 사례(1618·1637·1666년)가 있기는 하다.⁶⁸⁾ 그러나 그것이 곧 일본의

67) 『同文彙考』 부편, 권 26, 爭難, 差倭辨明竹島疑端書(疑問四條).

『竹嶋紀事』2, 元祿 8년(1695) 5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사본), MF 5424).

『竹嶋紀事本末』올해년 5월일 서계.

68) 위의 3건(1618·1637·1666)은 모두 일본인이 울릉도에 어획차 도해했다가 귀로 시 조선의 어느 포구에 표착한 사례였다. 말하자면 울릉도 무단 도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한 때문인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난사고를 당한 표류·표착으로 취급하여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구체적으로는 1618년(광해군 10)에는 ‘鬱陵島’ 어획을 목표로 조선에 도해했다가 귀로 시 표착하게 된 일본 어민 ‘馬多三伊’ 등이 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1637년(인조 15)과 1666년(현종 7)에도 울릉도(竹島)에서 어로활동을 한 후 귀로에 해난사고를 당한 일본 어민(호키노구니 요나고(伯耆國 米子)을 표류민으로 취급하여 송환한 바 있다. 이때 조선의 대응이란 일본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실제로는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외교문서에는 ‘일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竹島’로 향해하다가 조선에 표착한 것으로 처리하여 울릉도와 ‘竹島’(竹島)가 마치 별개의 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2島2名).

그 결과 1614년 조선의 관방 지침이 1614~1693년 사이 조일 양국간의 외교현안 내지는 마찰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즉 조선정부가 기유약조(1609년)에 근거하여 1614년 7월과 9월의 2차례에 걸쳐 외교문서(동래부사의 회답서계)로 일본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를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는

‘竹島’라는 증거는 되지 못하며,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⁶⁹⁾ 여기서 13통이란 한문과 번역문을 합한 것이므로, 아마도 1614년 동래부사 서계 2통, 1618년, 1637년, 1666년의 예조참의 서계 각 1통과 1693년(12월, 예조참판 權璫)의 서계, 그리고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스야마는 ‘竹島’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전제 하에, 조일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유로 조선이 70~80년 동안 ‘공도’(空島)로 방기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을 대마번주(宗義眞, 소 요시자네)에게 제안하였다. 소 요시자네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스야마의 견해는 대마번의 대막부 대응논리가 되었다.⁷⁰⁾

대마번의 소위 ‘詰問 4조’에는 이와 같은 스야마(陶山庄右衛門)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⁷¹⁾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조선이 수토를 소홀히 하여 ‘竹島’(울릉도)를 비워두었다는 것(空島)이고, 두 번째는 ‘竹島’가 조선이라면 왜 1618·1637·1666년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울릉도에 도해한 것을 표류민으로 취급했는가이다. 세 번째는 조선측의 ‘1도2명’ 주장이 과연 1614년 동래부사(박경업·윤수겸)의 서계를 근거로 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사항이었다.⁷²⁾

그리고 이 힐문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라면, 대마번은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그 즉시 막부에 제출하지 않은 채, 1695년까지도 대마번에서 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만약 대마번이 조선의 당부대로 1614년 당시 ‘磯竹島’가 조선의 울릉도라 기재된 조선측의 서계를 그 즉시 막부에 바로 제출했거나 그 취지를 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1693년이나 1694년 조선측의 답서에 기재된 ‘울릉’을 둘러싼 일본인의 ‘범월’문제는 이 문서를 근거로 이미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의 어획에 대해서도, 일본 어민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섬의 소속 표기는 없이 단지 ‘竹島’라는 섬의 명칭만을 기재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처리하였다.

69) 陶山存翁, 『竹島文談』(『日本經濟論叢』 권 13, 日本經濟學會).

이 책은 陶山存이 대마번사 가시마 효스게(賀島兵助)와 ‘울릉도 쟁계’ 교섭을 둘러싸고 의견 교환을 한 서장을 묶어놓은 책으로, 권오엽, 오니시 도시테루의 번역본(『고문서의 독도 죽도문답』한국학술정보 2010)이 있다.

70) 『竹島紀事本末』(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1, 동북아역사재단) 175쪽.

71) ‘울릉도쟁계’ 교섭과 관련하여 대마번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陶山庄右衛門의 역할을 검토한 것으로는 송휘영의 연구가 유일하다(『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일본문화학보』49, 2011). 그러나 陶山庄右衛門의 대조선 대응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72) ‘힐문 4조’에 대한 내용 소개 및 분석은 이훈의 논문(『울릉도쟁계(元祿竹島一件)와 근세 일본의 ‘죽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78, 2022, 396-409쪽)참조.

1693~1694년 시점에서 일찌감치 판가름이 났을 수도 있다. 대마번은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1614년 당시는 도쿠가와 막부가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戰亂(大坂の陣)으로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고, 그 이후는 대마번 내에서도 1630년대 대마번주와 그의 가신인 야나가와(柳川) 씨와의 권력투쟁(國書改作事件, 일본에서는 ‘야나가와잇켄’ 柳川一件) 등으로 제출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출을 미루는 사이 조선이 울릉도(竹島)에 도해한 일본인을 3번(1618·1637·1666년)이나 표류민으로 송환해 오는 등, 조선의 강역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도 1614년의 서계를 막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이다.⁷³⁾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는 ‘울릉도’에 대해 ‘1도2명’(礮竹島=鬱陵島) 논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더구나 대마번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막부에도 주시시켜 달라는 조선정부의 의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조선이 1614년 서계의 최종열람자를 막부 쇼군으로 설정해 놓은 이상, 문서 제출을 80년이나 미루고 있던 대마번으로서는 이제와서 조선 정부와 일본의 막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가 ‘이에야스의’ 礮竹島(울릉도) 탐사 지시’를 참칭한 대마번의 ‘僞書’ 가능성이 있는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라면, 대마번으로서는 조선의 강경 대응에 대비한 논리 구축은 물론, 보고 누락에 대한 막부의 문책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심각하게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1614년 동래부사 윤수겸(1614.7)의 서계에서 “막부에 전달해 달라는 조선정부의 당부”를 조선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선이 ‘礮竹島’가 울릉도라 기재된 1614년의 서계를 새삼스럽게 다시 들춰내어 크게 문제삼지만 않는다면, ‘1도2명’에 근거해서 울릉도가 조선 소속이라는 조선의 입장을 인정하되 조선측의 관리 소홀(空島)로 밀어붙이는 것이, 조선측의 입장에도 합치하면서 대마번의 책임도 가벼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동래부사(李熙龍)의 회신(을해, 1695년 6월)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즉, ‘1614년에 대마번이 탐사를 요청했던’ 礮竹島‘란 바로 조선의 울릉도라는 점(1도2명), 그리고 17세기 중반 일본인이 어로 차 도해한 ‘竹島’ 역시 조선의 울릉도로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조선의 어딘가에 표착한

73) 앞의 주)72 참조.

사고를 송환 처리한 것은 인도적인 조치라는 것, 그리고 1693년 제1차 답서(權階)의 서계에 기재된 「弊境之蔚陵島, 貴界竹島」(2도2명)를 예조의 실수로 처리하는 한편, ‘의죽도(죽도)=울릉도’라는 근거자료로 『輿地勝覽』과 『芝峯類說』을 제시하였다.⁷⁴⁾ 동래부와 왜관 체류 대마번 사자들 간에는 동래부사의 답신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마번 사자(橘眞重, 다치바나 도모마사)가 1695년 9월 예조참판(李畬) 답서를 수령한 후 대마도로 돌아갔다.

조선의 강경한 입장 선회에 대해, 대마번은 내부 논의 결과 조선이 항의를 해오기 전에 그동안의 교섭 경과를 막부에 미리 보고하는 한편, 향후의 교섭에 대해서도 막부의 영향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마번은 1695년 10월 소요시자네(宗義眞, 구 대마번주로 섭정 역할)의 의견서(口上書)와 함께, 그간 조선과 주고받은 4통의 서계(대마번주와 예조참판(權階(1693.12)·李畬(1694.9)의 왕복 서계 사본)를 막부의 로쥬(老中 아베 마사타케 阿部正式)에게 참고자료로서 제출하였다. 구상서는 조선의 ‘죽도’ 관리 소홀(空島)을 개진한 것으로, 이때 조선측 참고자료로서는 조선의 『輿地勝覽』·『芝峯類說』만을 제출하였다.⁷⁵⁾

단, 대마번이 막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스야마(陶山庄右衛門)가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마번은 비록 80년전의 문서라 하더라도 조선이 일본측의 최종 열람자로서 막부를 염두에 두고 제시한 3가지 관방 지침, 즉 ‘礮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를 不許하며, 이의 대막부 통보’를 당부한다는 방침을 외교문서로서 분명히 제시한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2통)를 ‘울릉도 쟁계’ 교섭 당시까지 분명히 보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번으로서는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문건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도쿠가와(德川) 막부에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이 1614년 외교문서의 존재와 취지를 내세우며 막부에 재차 강력하게 항의할 경우,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를 둘러싼 문제는 곧바로 조일 양국 중앙정부의 마찰로 비화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614년 이에야스 지시에 따른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은, 이에야스의 지시가 아니라 대마번이 참칭했

74) 『동문휘고』부편, 권 26, 爭難, 東萊府使答書.

『竹嶋紀事』2, 元祿 8년(1695) 5월 15일.

『竹嶋紀事本末』(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1, 동북아역사재단) 176~183쪽.

75) 『竹嶋紀事』3, 乙亥元祿 8년(1695) 10월조.

을 가능성이 있었다. 혹시라도 조선의 추궁으로 대마번이 이에야스(家康)의 지시를 참칭하여 서계(僞書)를 발급했던 사실이 노출되거나, 조선의 대막부 통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마번의 보고 누락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마번은 직무(家役) 소홀로 인해 막부로부터 대조선통교라는 ‘가역’을 몰수당할 수도 있었다.⁷⁶⁾ ‘가역’ 몰수라는 조치는 대마번의 소멸(廢藩, 또는 번주 교체), 말하자면 번주인 소(宗)씨 가문(宗家)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외교적 구속력이 강한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외교문서)는 은폐하여 ‘空島’논리로 대체하는 한편, ‘1도2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지리서(『輿地勝覽』)와 문집(『芝峯類說』)만을 제출해 둠으로써, 막부에 조선측 주장(1도2명)에 대한 예비지식을 주는 한편 대마번의 책임도 회피해보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⁷⁾

대마번이 이렇게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교섭을 둘러싼 대막부 대응에서 1614년의 동래부사 서계를 막부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기로 번의 방침을 정함에 따라, 막부의 ‘竹島(울릉도) 도해 금지 결정’(1696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竹島’(울릉도)의 소속을 둘러싼 막부와 돛토리번(鳥取藩)의 질의응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⁷⁸⁾ 그리하여 호키주 상인의 ‘竹島(울릉도) 도해를 금지’한다는 막부의 결정은 老中의 奉書(1696년 1월 28일)로 에도(江戶)의 대마번(번주, 소 요시자네 宗義眞)과 돛토리번(번주, 이케다 츠나키요 池田綱清)에 각각 전달되었다.⁷⁹⁾

76) 지금까지는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돛토리번(鳥取藩)이 대마번을 제치고 대조선교섭 주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가역’(家役)의 독점을 위해 대막부 교섭을 벌인 결과, ‘울릉도쟁계’ 교섭이 장기화되었다는 부분만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교섭 장기화의 요인으로 1693년 안용복의 피납 이후 이에야스(家康) 명의를 참칭한 문서(僞書) 발급 및 은폐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77) 앞의 주72) 참조.

78) 막부(老中 아베 마사타케 阿部正式)는 대마번의 보고 이후 바로 1695년 12월에 돛토리번(鳥取藩)에 ‘질의서’를 보내 ‘죽도’의 소속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돛토리번은, ‘竹島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에 속해 있지 않으며, 竹島(울릉도)·松島(독도)가 兩國(이나바·호키)에 부속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하였다(『竹嶋之書附』12월 24일 막부 질의서 돛토리번 답변서(鳥取縣立圖書館)『鳥取藩史』6(矢谷印刷所, 1971) 471~472쪽).

79) 『竹嶋紀事』3, 丙子元祿 9년(1696) 정월 28일.

「老中奉書」란 쇼군의 뜻을 로쥬(老中) 명의로 전달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先年松平新太郎因州伯州領地ノ節, 相伺-伯州米子町人村川市兵衛 大屋甚吉竹島江渡海,
 至于今雖致漁候, 向後 竹島江渡海-儀制禁可申付旨被仰出候間, 可被存其趣候. 恐々謹言.
 正月二十八日 土屋相模守
 戶田山城守
 阿部豊後守
 大久保加賀守
 松平伯耆守 殿

그러나 대마번이 막부의 지시를 곧바로 수행하지 않은 채 조선에 전달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 1696년 5월 안용복 등이 오키(隱岐)에 도항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미 1696년에 내려진 '울릉도 쟁계'에 대한 막부의 결론이 조일간에 외교적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1699년에 이르러서였다.⁸⁰⁾

7.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의 울릉도 영유와 울릉도 해역 관리 문제를, 1614년 일본측(대마번)의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614년 동래부사의 회답서계에 반영된 조선의 논리와 관방 지침이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교섭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조선측의 대응방향이 압축되어 있는 외교문서로서, 1614년의 동래부사(윤수겸·박경업) 서계와 1694년의 예조참판(李畬)의 서계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의 2가지 논리가 관철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하나는 울릉도가 조선 영유라는 근거로서 「鬱陵島(蔚陵島)=竹島」라는 「1도2명」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느 문서에도 '일본인(선박)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 및 이를 일본의 중앙정부인 도쿠가와 막부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대마번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조선에 도해할 수 있는 항로를 「대마도↔부산포」 직항로 하나로 한정하되, 이탈시 민간인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본정부(도쿠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 명령이 오야·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전달된 것은 1696년 8월로, 이후 두 가문은 1625년부터 70년 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온 울릉도 도항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 80)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령'은 1696년 10월 조선의 문위행(問慰行)이 대마번주(소 요시츠구, 宗義倫)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해 대마도에 파견되었을 때 조선측 역관(정관 卞廷郁)에게 구두(서계가 아닌 口上書)로 전달되었다. 대마번의 구두 전달은 조선측으로부터 '奉書' 형식의 문서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이 먼저 '울릉도 쟁계' 교섭에서 宗義眞의 역할을 치하해 왔다는 뜻을 막부에 부각시킴으로써 대마번의 대조선교섭이라는 '가역'을 더 공고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선측 회답은 결국 1698년 3월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溍) 명의로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내용으로 대마번에 발급되었다. 예조참의(李善溍)의 서계(奉書)는 대마번을 통해 1698년 7월 막부에 전달된 후 소군(將軍)의 열람을 거친 결과, 1699년 1월에는 대마번주(宗義眞)가 답서로 서계 전달 사실을 조선에 알려줌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참고로 이선부의 서계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대마도종가관계문서 서계 No.2343, MF1049).

가와 막부)를 상대로 아예 일본인이 울릉도 해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끌어내려는 엄중한 대응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1도2명』논리에 근거하여 울릉도 영유만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임란 이후 조선의 새로운 關防 지침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 조선에 접근할 수 있는 항로(航路) 문제에까지 시야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이 이미 17세기 초(1614년)부터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도해 금지를 일본 정부(막부)에 요청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도해 금지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 해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조선의 울릉도 영유와 관리 방침이 명백하게 제시된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를 대마번이 어떻게 취급했는가라는 것이었다. 검토 결과 대마번은 울릉도(礮竹島)가 조선 영유라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제시된 1614년의 동래부사(윤수겸·박경업)의 회답서계를, ‘울릉도쟁계’ 교섭(1693~1699년)이 진행중이던 1695년 시점까지 80년 동안 보관·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부에 ‘鬱陵島(蔚陵島)=竹島’의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로는 대마번의 존속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울릉도(礮竹島) 탐사 요청에 대한 ‘이에야스 지시’의 참칭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만약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가 이에야스의 지시를 참칭한 대마번의 위서(僞書)에 대한 회답이었다면, 대마번은 1614년 동래부사의 서계를 막부에 제출하는 순간 대조선 통교라는 ‘가역’(家役) 방기로 인식되어 막부로부터 가역의 몰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대마번주로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1614년의 문서를 은닉한 채, 조선의 울릉도 관리 소홀이라는 ‘空島’논리로 막부 대응을 하다 보니 교섭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完)

참고문헌

1. 자료

-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
『동문회고』 『扶桑錄』(李景稷)
『朝鮮通交大紀』(田中健夫·田代和生 교정, 日本 名著出版, 1978)
『通航一覽』(日本 清文堂出版, 1973)
『善隣通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751, MF 782, 국사편찬위원회)
『萬曆·天啓·崇禎不時來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5680, MF 901, 국사편찬위원회)
『元和六年庚申磯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内ニ入』(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6580, MF 961, 국사편찬위원회)
『延聘使御書翰之儀ニ付以酇菴輪番諦西堂江古川圖書懸合之覺』(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7, MF 631, 국사편찬위원회)
『竹島紀事本末』(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6583, MF961, 국사편찬위원회)
이선부(李善溥) 서계(대마도종가관계문서 서계 No.2343, MF1049, 국사편찬위원회)
『竹島紀事』(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2013)
『竹島考證』상 (독도자료집 II,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竹島文談』(陶山存翁, 『日本經濟論叢』 권 13, 日本經濟學會)
『竹嶋之書附』(『鳥取藩史』 6, 矢谷印刷所, 1971)

2. 저서 및 논문

- 김경옥, 2004, 『조선후기 島嶼연구』, 혜안.
윤유숙, 2016,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혜안.
이 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이 훈, 2019,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박지영, 2019, 「‘鳥取藩의 고문서’와 독도영유권」, 『한국영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현진, 2013,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의 증명력-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확립·해상국경묵시합의-」, 『국제법학회논총』 58권 3호.
- 박현진, 2018,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사본)의 증명력(II)-국제재판에서의 입증책임·기준과 史書·사료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3권 4호, 57-90쪽.
- 손승철, 2011,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집, 205-259쪽.
- 송휘영, 2011,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대마번(對馬藩)」,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Ⅲ, 영남대 독도연구소, 경인문화사.
- 유미립, 2016,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 『영토해양연구』 12권, 44-73쪽.
- 윤유숙, 2012a,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118집, 281-321쪽.
- 윤유숙, 2012b, 「근세 돛토리번(鳥取藩) 町人の 울릉도 도해」, 『한일관계사연구』 42호, 417-463쪽.
- 윤유숙, 2013a,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 사건과 대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 123집, 401-445쪽.
- 윤유숙, 2013b, 「1696년 오키(隱岐)에 도향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 『일본역사연구』 38집, 119-147쪽.
- 이 훈, 2022, 「울릉도쟁계(元祿竹島一件)와 근세 일본의 ‘죽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78집, 373-439쪽.
- 이계황, 2011,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와 조·일 외교교섭」, 『일본역사연구』 33집, 73-113쪽.
- 이성환, 2019, 「울릉도쟁계의 조일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 26권, 189-227쪽.
- 장순순, 2012a,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집, 37-71쪽.
- 장순순, 2012b,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 시비」, 『동북아역사논총』 37호, 189-232쪽.
- 장순순, 2013, 「17세기 후반 ‘鬱陵島 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1699년)」, 『한일관계사연구』 45집, 207-248쪽.
- 최영성, 2019,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독도연구』 26권, 89-127쪽.
- 최은석, 2011, 「안용복 사건의 무대-17세기 돛토리번과 오키국」,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독도』, 동북아역사재단.

- 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교섭과 울릉도-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을 중심으로-」, 『독도·울릉도 연구·역사·지리·고고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홍정원, 2016, 「조선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관할」,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池內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會.
- 池內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會.
- 池內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 池內敏, 2007, 「隱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 『鳥取地域史研究』 9.
- 池內敏, 2008, 「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10.
- 池內敏, 2009, 「安龍福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55.
- 池內敏, 2012, 「安龍福事件考(안용복사건 고찰)」,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대구한의대 안용복연구소학술총서 1.
- 池內敏, 2015, 「‘國境’未滿」, 『日本史研究』 630.
- 長節子, 1971, 「黒田省三氏<宗氏承統對馬守護職稱>批判」, 『朝鮮學報』 58.

<Abstract>

The Management of Ulleungdo in Choseon and the 1614-year Seogye of Dongrae-Busa

Lee Hoon*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Choseon's territorial rights and management of Ulleungdo after the Imjin War (the Japanese invasions of Choseon in 1592), focusing on the request for exploration of Ulleungdo (Uijukdo Island) by the Japanese side (Tsushima-han) in 1614 and Choseon's response to it.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logic of the Choseon government's territorial rights over Ulleungdo and the policy of the border management (border defense) reflected in the replying Seogye (the formal diplomatic document) of the Dongrae-Busa (Yoon Su Gyeom and Park Gyeong Up) in 1614 were consistently maintained in the Seogye of Yejo (Yejo Champan Lee Yo, 1694.9) during the negotiation of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① The logic of 'One Island-Two Names', called 'Uijukdo Island (Takeshima) = Ulleungdo', was already used since 1614 as the basis for Ulleungdo being under Choseon's territorial rights.

② In the Dongrae-Busa's two official documents issued to the Lord of Tsushima-han, it was stated that 'unauthorized sailing to Ulleungdo by Japanese (or Japanese ships) is prohibited' and that even if they are Japanese civilians, they will be 'punished' if they deviate from the route ('Tsushima↔Busan Port' direct route) established in the 'Treaty' (Giyu Treaty, 1609).

This was considered to reflect the board management policy based on Choseon's sailing prohibition since the mid-15th century.

③ It was examined after receiving the response documents of Dongrae-Busa (1614; Yoon Soo Gyeom and Park Gyeong Up), which included a request to 'deliver the Prohibition of Japanese (or Japanese ships) unauthorized sailing to Ulleung Island to the Shogunate', how Tsushima-han handled it.

*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Issues, Hallym University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despite the Tsushima-han having kept and reviewed it for nearly 80 years until 1695 when the negotiation of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1693~1699) was underway, they ultimately did not submit the response documents of the Dongrae-Busa (1614, Yoon Su Gyeom and Park Gyeong Up) as evidence of 'Ulleungdo = Takeshima' to the Shogunate.

For that reason, it was inferred that the request for an exploration of Ulleungdo Island (Uijukdo Island) by impersonating Ieyasu may have been intentionally omitted in terms of the survival and profit of Tsushima-han.

Key Words : Tsushima-han, Uijukdo, Ulleungdo Island, One Island-Two Names, Border Defense, Sailing prohibition, Tokugawa Sohogunate, A formal diplomatic document (Seogye), Yoon Su Gyeom (Dongrae-Busa, July 1614), Park Gyeong Up (Dongrae-Busa, September 1614), Lee Yo (Yejo Champan, September 1694)